

『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1월 17일

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‘06. 01. 11제정)이 ‘06. 07.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3조)
-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(안 제4조 및 제5조)
- 기반시설 부담률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부담금 산정기준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0조(예비비)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